인권과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리해

최 일 복

인권과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해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인권을 가장 훌륭히 보장해주는 참다 운 인권보장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람차고 존엄있는 삶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됩니다.》(《김일성천집》제94권 294~295폐지)

인권은 국가사회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인류력사에서 국가가 발생한 후 사람들은 일정한 국가에 소속되여 생활하여왔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인권은 구체적인 국가사회제도속에 서 실현되여나간다.

국가사회제도는 국가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 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해당 국가사회제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원만히 실현해나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은 자기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도 실현해나갈수 없게 된다.

국가사회제도는 그 구성내용에 있어서 크게 정치, 경제, 문화제도로 이루어져있다.

정치제도는 주권의 조직 및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성원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정치제도에 의하여 주권의 소속관계, 주권기관의 구성과 권한, 주권행 사절차와 방법, 주권의 행사과정에 대한 감독관계가 규제되며 해당 국가사회제도에서 주 권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의 구체적인 권리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물질적부의 생산과 분배, 교환활동과 소비생활의 전과정에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경제제도에 의하여나라의 자원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규정되고 사회적로동의 성격과 나라의 물질적부가누구를 위하여 리용되며 누구에게 복무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문화제도는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체육, 도덕 등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와 리용 과정에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문화제도에 의하여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 의 건전한 발전이 좌우되게 된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제도를 구성내용으로 하는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인권보장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왜냐하면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의 인권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되고 담보되여야 할 자유 와 권리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해당 국가사회제도가 인권보장과 그 실현에 복무하는 사회제도로 되려면 그 구성내용인 정치, 경제, 문화제도들이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도록 옳바로 수립되여야 한다.

국가사회제도는 중요하게는 국가에 의하여 제정공포되는 법에 의하여 수립된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제도들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 한 법률들에 의하여 확립된다.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을 비롯한 법률들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원칙들과 해당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이 지니는 기본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것을 법률제 도적으로 고착시키고있다.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소속된 사회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법률제도적으로 규제되며 그들이 해당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성격과 내용, 그의 구체적인 보장과 담보도 법률제도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 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가지는 자주적권리로서의 인권이 해당 국가사회제도, 법률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로부터 인권문제는 언제나 정치적문제로, 법률적문제로 제기된다.

봉건사회말기에 신흥부르죠아지가 처음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된것도 봉건사회제도가 강요하는 신분적억압과 불평등을 없애고 부르죠아적《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것도 극소수의 대독점자본가계급에게만 법률제도적으로 온갖 특권을 보장해주고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는 자본주의국가사회제도의 반인민적성격에 그 근본요인이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제도야말로 인민 대중의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여주는 진정한 인 권보장제도이다.

국가사회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것이 인권보장제도로 될수도 있고 인권유린제 도로 될수도 있다. 그것은 계급사회에서 국가사회제도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도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설정되기때문이다.

계급사회에서 국가사회제도는 언제나 해당 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에 의하여 수립되며 그의 계급적리익실현에 복무한다. 해당 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은 자기들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여 국가사회제도를 확립하며 자기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것을 개선해나간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권과의 관계속에서 볼 때 국가사회제도는 해당 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의 인권실현에 복무하게 되는것이다.

국가사회제도는 해당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사회성원들의 인권을 담보하고 보장해준다. 자본주의국가사회제도는 자본가계급의 《인권》은 옹호해주지만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은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은 옹호해주지만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대세력들의 반동적책동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에 대하여 가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는 곧 인민의 인권보호, 인권옹호로 된다.

이처럼 인권은 국가사회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국가사회제도에 의하여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담보된다.

참다운 인권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보장되고 실혀될수 있다.

우선 해당 국가사회제도가 참다운 인권보장제도로 되려면 그것이 인민적이며 민주주 의적인 제도로 되여야 한다.

참다운 인권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그들자신이 건설한 국가 사회제도에 의하여서만이 보장될수 있고 실현될수 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여온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이르는 착취자국가사회제도가 인민을 배제하고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착취계급에 의하여 그들의 요구와 리익만을 대변하고 옹호할수 있게 조작되였기때문이다.

오랜 력사적기간 극소수의 착취계급에 의하여 자기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여온 인민대중은 참다운 인권실현을 위한 투쟁, 국가주권의 주 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마침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국가사회제도,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는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자신이 선택하고 자기들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자신이 건설한 사회제도인것으로 하여 인민의 참다운 인권 실현에 복무하는 진정한 인권보장제도로 된다.

또한 해당 국가사회제도가 참다운 인권보장제도로 되려면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 중의 본성적요구인 집단주의를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로 하는 사회제도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며 집단주의가 사회력사발전의 주체인 인 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기때문이다.

인권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결코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떠벌이고있는것처럼 《천부적권리》가 아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마치도 인권이 자연상태에서 조물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인듯이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사회가 형성된 때로부터 인간이 사회로부터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이다. 만일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지 않는다면 인권문제 그자체가 제기될수도 없다.

인류력사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게 된것은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착취계급이 저들의 특권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였기때문이다. 결국 인권문제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세력과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세력사이의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였다.

인권이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구체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실현되여나가고있는 사회적권리인것으로 하여 항상 사회적성격,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의 성격에 따라 서 인권이 실현될수도 있고 유린될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인권은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의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사회의 매 성원들의 인권이 규정되게 되며 그실현담보가 결정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여나가려면 사회성원들사이의 관계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가지는 사회적권리로서의 인권은 다른 사회성원들과의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실현되여나간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회성원들 의 인권이 다같이 실현되여나가려면 그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되 여야 한다. 사람들사이의 믿음과 사랑, 호상협조의 관계속에서만이 사람은 자기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

사회성원들사이의 진정한 동지적사랑과 호상협조하는 관계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서 만이 수립될수 있다.

집단주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인 동시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단결과 협력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은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내세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곧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단결과 협조를 떠나서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에서 자기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는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수립한 제도 인것으로 하여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여있는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하나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합된 힘으로 자연과 사 회를 개조해나가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려나간다. 이러한 사회제도에서는 사회의 리익과 개인이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설정되며 실현되여나간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사람들사이에서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온 사회에 화목과 단합이 이룩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귀한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최고의 리상으로 간직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사회적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자유와 평등은 동지적사랑과 믿음, 호상협조에 기초하여 보다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그러나 적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진 계급들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라는것은 언제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게 된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국가사회제도는 인간증오사상의 만연과 끝없이 늘어나는 온갖 범죄들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해줄수 없다.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에서만 사회에 참다운 단결과 협조의 관계가 수립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진정한 인권도 철저히 담보되고 보장되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람차고 존엄있는 삶을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장제도이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국가사회제도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여 우리 인 민자신이 건설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국가사회제도를 자기의 손으로 건설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리익에 맞게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건설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모든 정책은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수립되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관철되여나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권보장제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 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인민들이 세금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도와 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서 누구나 다 돈 한푼들이지 않고 치료받고있으며 마음껏 배우고있다.

현시기 우리 인민은 근로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 꿀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밑에 누구나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며 이 세상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